

全國民을 위한 環境教育의 先導的役割을 기대하며…

安基熙

(國際環境問題研究所長)

目 次

- I. 環境問題의 世界的 動向
- II. 憲法의 環境權의 明文化 實現
- III. 環境倫理觀의 轉換促求
- IV. 全國民을 위한 環境教育과 啓蒙運動의
 필요성
- V. 協會育成의 時急性
- VI. 專門誌 創刊 이후의 發展的 課題

I. 環境問題의 世界的인 動向

1972년의 UN人間環境會議는 人間環境의 保全과 向上에 관해 世界 모든 人類에게 이에 對한 認識을 고취시키고 順應하기 위한 共同의 見解와 共通의 原則이 必要하다는데 합의하고 世界的인 次元에서의 人間環境을 宣言한데 이어, 1982. 10. 28. UN總會는 「自然은 尊重받아야 하며, 지구상의 遺傳因子의 生存能力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世界自然憲章(World Charter for Nature)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므로 環境問題는 UN의 범주로 하는 世界的 問題로 비화되었으며, UN의 기능 중 國際平和維持와 함께 人類의 存亡에 관한 中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世界各國은 世界環境政策의 추구는 물론 企業 및 一般國民의 環境問題의 새로운 認識과 必要性에 對應하려는 여러가지 保全戰略과 그 實行對策에 부심하고 있

는 실정이다. 즉, 全 世界를 통한 人類의 福祉와 經濟開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人間環境의 保護와 改善」을 주제로 한 72년의 「스톡홀름」宣言과 生態學의 危機(ecological crisis)에 직면한 全 地球上의 生物資源의 지속적 富養能力을 高揚하려는 「生物圈保護」에 역점을 둔 82년의 UN總會의 결의는 「하나뿐인 地球」의 環境污染 및 環境破壞에 대하여 全 世界 일 반대 중들에게 이해심과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環境章典」이라 일컫는 UN의 「人間環境과 自然環境」의 兩大宣言의 實行을 위한 努力은 UN EP(유엔環境計劃)의 지속적 연구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UN의 公式 또는 非公式 活動以外에도 全 世界 先進經濟를 주도하는 OECD(經濟開發協力機構)에서 開發에 앞서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環境影響評價制와 環境費用의 汚染者負擔原則(ppp : polluter pays principle)을 결의한 努力 및 IUCN(國際自然保全聯盟)의 自然保護運動의 世界的인 研究·交流등의 훌륭한 업적은 全世界의 次元에서의 共同連帶의 지속적 노력의지의 표명과 함께 汎世界的 次元의 實行對策의 천명임을 해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努力에 부응하려는 各國의 環境保全運動은 한 國家의 意志만으로는 불가능하고 全企業人과 國民의 環境資源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情報가 必要하다는 관점에서 憲法에 環境權을 明文化 하는가 하면, 環境權을 實現하려는 環境法의 制定, 綜合調停과 새로운 問題에 適宜對應

하려는 環境機構의 創設, 全國民의 環境教育化를 위하여 教科課程의 設定은 물론 一般教育課程에서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社會教育의 次元에서 教育訓練 및 環境情報의 새로운 주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밖으로는 UN의 環境宣言의 준수와 함께 정부「례별」에서 UNEP에 參席하여 世界的인 環境問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안으로는 國政指標의 根幹으로 한다는前提下에 늦게나마 國民學校 中·高等學校教科課程에 環境教育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一般大衆을 위한 環境教育으로서는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로 하여금 82년 9월부터 우선 排出施設管理人의 法定研修教育을 施行함으로서 우리나라 一般大衆 環境教育의 새로운 章을 열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 금년에는 協會가 종래의 月報를 지양하고 좀더 기동성 있게 企業과 一般大衆 속으로 깊숙히 파고 들기 위하여 月 2回發刊「環境保全協會報」의 環境專門誌를 時宜性에 맞게 創刊하게 된 것은 企業人은 물론 一般大衆의 環境教育과 계몽을 고취하는 뜻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本環境專門誌의 뜻깊은 革新號의 發刊을 축하하는 뜻에서 本誌誕生의 계기를 촉구하게 된 環境權의 明文化背景과 그 實現의 촉구, 企業人의 環境倫理觀轉換, 全國民의 계몽을 위한 環境教育의 必要性을 概括的으로 言及한 후, 本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協會가 지속적으로 育成發展되어야 할 方向提示와 함께 本誌의 向後發展의 課題 몇가지를 言及해 보고자 한다.

II. 憲法의 環境權의 明文化實現

人類의 福祉와 經濟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環境保全問題는 「……모든 政府의 責任이다」라는 UN人間環境宣言의 原則은 우리나라 第5共和國憲法 第33條에 「環境權」을 明文化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宣言의 規定을 두고 있다. 이 뜻은 모든 國民은 環境污

染 등의 被害를 입어서는 안되며 環境保全은 國家와 國民의 共同連帶의 原則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의 環境權(Environmental Rights)이란 人間이 보다 좋은 環境을 享有할 權利이며 環境權의 侵害(公害·污染)를 排除할 수 있는 배타적 權利이다. 이 權利는 人間의 基本的 人權의 일종이며 人間生存을 위한 絶對權이고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부여된 權利이다.

이러한 環境權이 우리 憲法에 世界에서도 빠르게 明文化된 배경은 196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을 추구해 온 정부로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 일부공단주변에서 污染의 被害가 야기되자 成長속의 고뇌(污染)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UN의 人間環境宣言에도 불구하고 高度經濟成長政策은 즉각적인 變화를 보이지 않다가 1978년 政府가 自然保護憲章을 宣布하면서 内務部 主管下의 거국적인 自然保護運動을 展開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運動은 지역주민, 學子關係專門家, 言論人 및 방송 매체등의 影響을 힘입어 社會全般에 새로운 環境與論으로 비등되었고, 이러한 與論의 기적은 1980년 第5共和國憲法 改正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어 당시 憲法改正 公聽會의 公述人 24人중 18人(75%)이 環境權의 신설을 주장하여 國民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憲法에 明文化 된 것이다.

우리憲法의 環境權에 관한 規定이 「스페인」 등의 憲法의 경우처럼 污染과 被害에 對하여 모든 國民의 權利·義務·補償까지를 배려하여 직접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規定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욕적인 지속적 經濟成長政策에 環境保全이라는 새로운 理念轉換의 기본적 지주역할을 해줄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下位環境法이 成長論에 밀려 被害者가 因果關係의 입증, 無過失責任, 受忍限度論의 판단에서 不利할 수 밖에 없었으나 本誌는 이러한 環境權의 侵害에 對하여 상응한 보장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法的 정비는 물론 行政的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촉구로서 가교적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III. 環境倫理觀의 轉換促求

國家의 最高法인 憲法에 明文化된 環境保全理念의 가장 根本은 生物圈保護에 있다.

. 우리나라를 지난 수년간 주로 物量成長을 위한 開發政策에 유념해 왔기 때문에 環境에 대한理念이나 環境倫理觀의 認識이 뒤진 것은 사실이다.

全國民의 環境倫理觀이 올바르게 確立되지 않은 狀態에서 새로운 環境法이나 環境政策의 수행은 그 實效性 면에서 피이 현상을 빚게 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自然保護憲章宣布를 계기로 해서 政府政策意志의 專換努力과 新聞放送매체 등을 통한 全國民의 계몽과 홍보활동은 물론 學者, 關係專門家 등의 애쓴 努力에 비해 그 성과는 아직도 環境問題를 先成長·後保全의 先後의 별개문제로 두려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그 예로써 政府開發論者들은 아직도 고덕지구와 한강개발에 環境影響評價를 뒤로 한 채 개발에만 급급한 점이나, 官主導의 自然保護運動 6年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 自然保護運動을 쓰레기나 병 줍는 式의 청소운동에 그치고 있다는 경향이다.

自然保全의 根本은 生物圈保護를 根幹으로 해서 全地球上에 서식하는 生態系의 生存能力의 지속은 물론 그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景觀 등의 自然環境을 人間이 유효적절하게 管理·利用·保全 함으로써 現在人은 물론 後世人에게까지 泰적한 環境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環境政策의 추진 방향은 「開發」과 「保全」을 先後의 別個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成長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된 하 나의 發展戰略으로 보아 다가을 미래인에게 까지 배려되는 自然生態系의 自淨能力의 배양과 수려한 生物資源 및 自然景觀의 保全에 最大限의 역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國民은 泰적한 環境에서 살 權利가 있는 반면에 個個人이나 公共活動으로 인해서 生態系의 自淨能力이喪失되거나 自然景觀이 파손, 멸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넓게는 生活環境의 公共性의 유지 의무까지를 망라해서 泰적한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해서 후세대에 물려줄 의무까지 지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現存하는 人

間의 福利增進만을 위해서 天然自然環境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남산의 외인 아파트 건설과 같이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許容해서는 안될 것이다.

人間과 自然環境의 관계를 잠시 고찰해 보면 初期工業社會에 있어서의 自然에 대한 人間의 態度를 특색짓는 世界觀은 人間이 自然보다 우월한 地位에서 自然을 지배하는 즉, 自然征服의 思想, 다시 말해서 自然을 人間의 必要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人間을 위해 최대한으로 취취했던 開發文明에 있어서의 經濟倫理觀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잘못된 觀念은 工業社會 이후의 새로운 社會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人間에 의한 自然의 虐害로부터 自然과의 共存關係를 배려한 새로운 環境倫理觀이 必要하게 되면서 부터 加速化 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일부 물지각한 企業人이 初期工業社會의 經濟倫理觀에 집착하여 全國民이 영원토록 누릴 大自然을 당국의 許可도 없이 마구 남벌 내지 開發하는 일이 있어 크게 지탄을 받고 있다.

憲法에 環境權이 明文化된 현 시점에서는 우리 人間도 넓은 意味에서 生態系의 한 種으로 보아 自然의 범주속으로 풀여 들어 모든 生物圈을 畏敬하는 새로운 認識의 環境倫理觀의 轉換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本誌의 創刊은 協會의 環境研修敎育과 行政해서 우리나라 企業人은 물론 國民大眾의 環境倫理觀의 確立에 先導的役割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V. 全國民을 위한 環境敎育과 啓蒙運動의 必要性

人間行爲의 目標와 樣式은 현상에 대한 認識과 思考方式에 의하여 좌우되며, 知識은 行動을 生產하는데 있어 제1차적 要素이다. 따라서 環境問題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人間이 環境을感知하는 良識과 環境(倫理)觀에 의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價値觀의 修正을 위한 새로운 環境倫理觀의 確立은 現時點에서 매

우 시급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價値體系의 確立을 위한 改革手段으로는 教育, 캠페인, 교류, 연구모델, 實驗, 센타활용 등이 있다 하겠는바 本誌의 發刊은 이러한 改革手段에 다음과 같은 분야에 의욕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① 環境教育 ; 環境教育이란 人間과 環境間의相互作用關係에 對한 知識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環境文盲狀態를 면하게 하고 바람직한 環境觀을 社會全體에 형성하여 環境問題에 대한 일치된 의사의 조성과 環境管理의 개별적 행동준칙을 習得시킴으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參與를 유도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環境教育은 環境을 保護하고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世論을 啓發하고 企業 및 地域社會가 責任있는 行動을 취하기 위한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必要不可決한 것이다. 즉, 環境教育은 全生涯를 통한 平生教育이어야 하며, 技能과 技術의 習得보다는 態度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배우는 者가 教育課程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教育은 學校教育은 물론 社會市民教育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共同參與로써 部分環境과 全地球的 環境에 대한 해독력을 높이고 각자의 部分環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必要한 실천을 하도록 하며, 人類共同社會의 發展方向과 각자가 소망하는 生活의 質에 대한 價値定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環境education의 必要性에 비하여 現在經濟. 社會活動을 주도하는 成人們은 大部分 環境education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協會의 社會education을 위한 環境研修education의 개설의 의의는 크다 할 것이며, 工團周邊에 多發的으로 生產하고 있는 環境問題에 탄력성과 기동성 있게 심층보도하기 위한 專門誌로서의 發刊意欲은 매우 時宣에 맞다 할 것이다.

② 캠페인·홍보 ; 大衆에게 一般的인 環境問題에 관해 알리기 위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일단 환경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기에 대처해서 그 危機를 모면할 知識과 知慧를 갖게 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環境問題에 對한 與論의 일치와 個別化된 環境觀을 集團化시키고, 擴散시키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啓蒙은 必要하며 그렇게 하므로 社會的 「이슈」가 되어 政策에 반영이 可能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의 環境政策의 方向은 全國民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되어야 하며 政府研究機關에서 수집된 측정자료와 研究자료는 원하는 國民에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만 國民의 환경문제 對應ability이 提高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現在 산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은 민간운동을 구축으로 하는 좀더 체계적인 조직화가 必要하며 全國民의 인식이 새로워질 때까지 일관된 지속적인 운동이 必要하다.

그런면에서 本誌의 發刊은 우리나라 거국적인 차원에서 環境캠페인과 홍보활동의 새로운 里程碑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V. 協會育成의 時急性

위와같은 環境問題에 탄력성과 기동성 있게 對應하려는 環境management의 綜合화와 效率化를 위한 環境機構의 擴充·強化는 現代行政組織의 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계부처와 대등한 立場에서 環境綜合行政을 주관하기에는 미흡한 環境廳의 「部」나 「處」의 승격강화는 물론 民間活動의 次元에서 「官」과 「民」의 원충적 역할에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企業과 國民의 意思를 결집할 民間主導의 기구의 擴充強化는 시급한 과제다.

環境對策은 法的·賦課金 등의 強制的 手段에 의존하기 보다는, 설득, 행정지도, 기술지원, 교육·계몽 등의 비강제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이 장기적 안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本誌를 發刊 弘報하게 되는 協會는 專問調查研究機關으로서의 擴充·強化, 企業利益保護機關으로서의 대변, 그리고 政府業務의 代行 補助機關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強化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첫째, 財政的 基盤의 安定化이다. 財政的 基盤이 빈약하고서는 전문지로서 복잡다기한 새로운 環境問題에 積極的인 대응으로 심층보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環境問題의 대부분의 연유가 企業活動에서 야기된다고 할 때 汚染者負擔原則에 立脚하여 財政基盤子축에 企業의 積極的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둘째, 實驗·研究室, 도서자료실, 環境센타 등의 설치 운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協會가 측정실험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로는 많은 교육연수생의 실험실로서는 부족하며 專門誌 發刊 역시 고도의 전문지식에 의해 研究實驗되고, 많은 國内外의 文獻에 의존해야 되므로 환경전문도서실의 설치는 또한 환경인들이必要하고 아쉬울 때마다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연구발표 등의 환경문제 공동의 광장으로서의 環境센타의 전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째, 組織의 多角的인 강화를 촉구한다.

同協會의 會員構成은 아직도 任意的 加入에 의존하므로서 관련기업의 미가입은 社會的 責任性이 그만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社會衝平의 正義에도 어긋나는 일로 되고 있다.

事業者の 의무적 加入化는 물론, 關聯業體 및 환경관계인의 의무적 加入의立法化가 요망된다. 네째, 環境専門人力의 確保를 촉구한다.

環境問題의 解決은 既存의 價値體係를 수정하며 새로운 知識과 기술을 주입하는 새로운 價値·制度·技術體係가 必要하므로 環境教育·캠페인, 측정연구 기술요원의 確保없이는 전국 민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啓導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有能하고 잘 訓練된 環境専門家와 우수한 기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함에 있어서 정부 「레벨」에서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VI. 專門誌 創刊 이후의 發展的 課題

企業活動을 주도하는 成人들은 거의 環境敎育의 機會를 놓친 環境文盲狀態이므로 우선적으로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環境問題의 解決을 위한 敎育·캠페인·홍보활동 강화의 선도적 역

할을 하게 될 本誌에 거는 발전적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環境問題의 관심사항, 환경지식, 그리고 기술을 모든 관계분야에 統合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環境的 측면에서 환경철학과 문제해결에 대응하는 올바른 企業人과 市民을 양성하고 啓導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특정한 環境問題를 學際的(Interdisciplinary) 또는 合同的(multidisciplinary) 접근으로 다룰 자격 있는 專門家의 욕구충족에 부응하는 충분한 자료와 문제의 틀을 제공하는데 積極努力하여야 한다.

네째, 여러 環境關聯단체 및 전문인력 - 정치가, 계획가, 전문가, 지역지도자, 교수, 교사 등 -에 의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아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다루어 지도록 애써야 한다.

다섯째, 이미 공단주변에서는 디발적으로 오염의 被害가 속출되고 있어 移住問題 등이 활발하게 論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잘못된 環境問題의 告發爲主의 기사보다는 問題의 原因, 現況分析, 改善對策 등을 多角的인 次元에서 深層깊게 다루므로서 問題外 他地域의 第2의 被害가 속출하지 않도록 예방적 파수꾼役害을 다 해줄 것을 衷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 「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関係法令解說, 公害防止関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建議 및 隘路問題相談 등을 無料實施하고 있으니 많은 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 (753) 7669
(754) 5836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

알
린